

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038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7년 11월 23일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수정이유

-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(IPC)에 따르면 장애유형이 절단 및 기타 장애(지체장애 포함), 시각장애, 지적장애(발달장애 포함), 청각장애(언어장애 포함), 뇌성마비 장애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,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현 종목의 선수들은 지체장애인들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종목 선수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, 장애인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고 재정자립도가 상위인 서울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골자

- 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을 25명에서 45명으로 증원하며, 이에 따라 총 200명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인 정원을 220명으로 확대함(안 제3조제4항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4항 중 “경기인은 총 210명(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35명을 포함한다)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경기인은 총 220명(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45명을 포함한다)의 범위 안에서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
제3조(경기부 설치 등) ① ~ ③ (생 략) ④ <u>경기인은 총 200명</u> <u>(장애인 경기 종목의</u> <u>경기인 25명을 포함한</u> <u>다)의 범위 안에서</u> 각 종목별로 감독 1명, 코 치 1명 및 트레이너 1명 을 둘 수 있으며, 각 구 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 다. 1. ~ 3. (생 략) ⑤ ~ ⑧ (생 략)	제3조(경기부 설치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경기인은 총 210명</u> <u>(장애인 경기 종목의</u> <u>경기인 35명을 포함한</u> <u>다)의 범위 안에서</u>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⑤ ~ ⑧ (현행과 같음)	제3조(경기부 설치 등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 ④ <u>경기인은 총 220명</u> <u>(장애인 경기 종목의</u> <u>경기인 45명을 포함한</u> <u>다)의 범위 안에서</u>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1. ~ 3. (개정안과 같음) ⑤ ~ ⑧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경기인은 총 200명(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25명을 포함한다)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경기인은 총 220명(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45명을 포함한다)의 범위 안에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경기부 설치 등) ① ~ ③ (생략)	제3조(경기부 설치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경기인은 총 200명(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25명을 포함한다)의 범위 안에서</u> 각 종목별로 감독 1명, 코치 1명 및 트레이너 1명을 둘 수 있으며,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	④ <u>경기인은 총 220명(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45명을 포함한다)의 범위 안에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⑤ ~ ⑧ (생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